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소관부서 : 문화예술과

제정 1996·3·1 조례 제 20호
 개정 1998·10·14 조례 제 24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1·11·28 조례 제 392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7·7·2 조례 제 664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 2016·7·5 조례 제1246호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천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편찬지침 및 운영방안
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와 연구
3. 시사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심사
4. 시사편찬 및 발간
5. 그 밖에 시장이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사람
2. 시사업무를 담당하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

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질병,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시사편찬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 및 위원의 정수 및 기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시사편찬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사편찬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다만, 시사편찬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시사편찬업무는 시장이 한다. 다만, 시사편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사편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사편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업무를 위탁 할 경우에는 「이천

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제13조(연구원 구성 및 역할) ①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

1. 자료수집 조사연구에 필요한 1명의 선임연구원과 1명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시사편찬 사업기간에 시장이 위촉한다.
2. 다만, 지속적인 자료수집·정리·관리가 필요할 경우 사업기간 이후에도 연구원을 둘 수 있다.
3.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은 위원회 운영과 시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7·5 조례 제1246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9조제8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17조,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7조제2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4조,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

치 및 운영 조례」 제23조제1항,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2조제2항,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제13조,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항,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9조제2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제4항, 「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6조제3항,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제23조,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2조제3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7조제2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1항,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제15조,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1조제2항,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5조,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제4항 및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 중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각각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